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

□ 금감원은 중·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.

o 신용보험, 신원보험*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에 대하여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최근 1년간 연대보증인 입보계약은 43만 9천건임.

- 특히, 분양보증 등 고손해상품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 비율이 20%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연대보증제도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.

o 주 채무자의 채무액 상당부분을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로 부과할 경우 중·소서민의 보증 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용인수 유도의 필요성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함.

* 신용보험은 채권자(계약자)가 자기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특성, 신원보험은 재정보증인을 대신하는 특성 등에 기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신용만으로 보증계약 인수가 가능함.

□ **제도개선을 통해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를 도입하고 지연손해금 산정방법, 연대보증약정 등도 개선함으로써 보증보험이 중·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**

o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,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도 함께 시행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함.

o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의 최고금리를 현행 19%에서 15%로 하향 조정하고,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.

o 연대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결정함.

o 물품 외상거래나 수수료 지급 보증시 이용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함.

o 기업성 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을 허용하되, 보증인의 범위를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특수관계인으로 제한함.

(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, 금감원, 11/5)